

통신위원회 보도자료

<http://www.kcc.go.kr>

공보관실 / 750-2811

문의 / 통신위원회 심의과장 김정렬(750-1730) / 2003. 9. 2(화)

이동전화 3사의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부당가입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

□ 통신위원회(위원장 : 尹昇榮)는 2003. 9. 1(월), 제92차 통신위원회를 열어,

□ 이동통신 3사가 발신번호표시 등 유료 부가서비스 및 선택요금제를 무단으로 가입시키거나, 의무사용조건을 부과하여 가입시킨 행위에 대해서

○ 위반행위의 중지 및 신문공표를 명하고, SKT 15억 원, KTF 4억 원, LGT 2억 8,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.

□ 한편, 한세텔레콤 무선데이터망과 SKT 이동전화망間, 하나로통신 시외·국제전화망과 KT 시내전화망 및 SKT 이동전화망間의 “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”을 인가하였으며

○ 정통부의 이동전화 착신과금서비스(080) 번호이동성 시행시기 연기(2007. 1월) 등은 이동통신 3사의 해당서비스 매출액이 저조하고 번호이동 수요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였다.

□ 녹색소비자연대가 신청인 23명을 대리하여 KT, 하나로통신, 두루넷 및 온세통신을 대상으로 신청한 1.25 인터넷 침해사고 손해배상 재정에 대해서는

○ 추가적으로 더 논의하여 차기 통신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.

※ 첨부 : 제92차 통신위원회 심의·의결결과 요약

1. 이동통신 3사의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 관련 이용약관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

□ 조사경위

- 통신위 사무국에서 2003. 7.28~8.26일 동안 이동전화 3사의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실태에 대해 조사함

□ 조사결과

- 현장적발 결과,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유치과정에서 부당한 계약을 체결한 건수는 SKT 7,345건, KTF 1,039건, LGT 530건임
 - 선택요금제 및 발신번호표시 등 유료 부가서비스를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가입시키거나, 1~3개월 의무사용 조건으로 가입시킨 행위는 이용약관과 다르게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 것임

< 이동전화 3사 요금제 · 부가서비스 가입관련 현장적발건수(건) >

구 분	무단가입	의무기간설정	합 계
SKT	34	7,311	7,345
KTF	37	1,002	1,039
LGT	100	430	530

※ 요금제 및 유료 부가서비스 무단가입 사례

- 2003. 7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보상기변한 이○○는 가입한 사실이 없는 발신번호 표시 및 선택요금제 등이 무단 가입되어 단말기가 배송됨

※ 요금제 의무사용기간 설정 사례

- ○○통신은 이용자 한○○에게 2003. 7월 신규가입시 선택요금제를 1개월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가입시킴

□ 시정조치

- 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위반행위의 중지 및 신문 공표를 명하고, SKT 15억원, KTF 4억원, LGT 2억 8,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함

2. 기간통신사업자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 인가

□ 배경

- 한세텔레콤 무선데이터망과 SKT 이동전화망間, 하나로통신 시외·국제전화망과 KT 시내전화망 및 SKT 이동전화망간의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(안)에 대하여 인가를 신청

□ 인가내용

- 同협정(안)이 “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기준” 등과 부합하므로 인가하되, 다만, SKT와 한세텔레콤의 상호접속협정中, 상대방의 접속호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“상호협의”를 거치도록 함

3. 이동전화 착신과금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계획 변경 심의

□ 배경

- 정보통신부가 이동전화 착신과금서비스(080) 번호이동성 시행 계획 변경(안)을 마련함에 따라, 시행시기 연기(2003. 6.30→2007. 1월) 및 기술방식 변경(RCF→QoR)을 심의함

* RCF(Remote Call Forwarding) : 기존사업자의 교환기DB를 조회한 後 변경사업자로 연결하는 방식으로서, 兩 사업자가 모두 다른 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함

* QoR(Query on Release) : 기존사업자가 이동된 번호인 경우 신호를 해제하면, 발신망에서 번호이동DB를 조회한 後 변경사업자로 연결하는 방식으로서, 전전자교환기가 있어야 함

□ 심의결과

- 이동전화 080 서비스는 가입자수 1,995명, 매출액 4,300만원 으로서 總080 서비스의 각각 1.2% 및 0.04%에 불과하나, 번호 이동성을 위한 총투자비는 1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변경(안)을 원안대로 심의함